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

제정 2007.09.17 개정 2014.11.28 개정 2019.09.18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임원, 단장 및 부서장 직무청렴계약(이하 "청렴계약"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9.9.18>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공사의 사장, 감사, 상임이사, 단장 및 부서장(처,실,지사장)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9.9.18>

제3조(청렴의무) ①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, 사규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(이하 "청렴의무"라 한다)를 진다.<개정 2019.9.18>

②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9.9.18>

- 1.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, 요구, 약속하는 행위
- 2. 직위,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, 알선, 청탁 등을 수수, 요구, 약속하는 행위
- 3. 이권개입, 알선, 청탁 등을 수수, 요구,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
- 4.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5.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- 6.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 법령 및 사규에서 금지하는 행위

제 2 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

제4조(계약의 체결 및 성립) ① 청렴계약은 사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.

② 사장 및 감사는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, 상임이사 및 단장은 사장, 부서장은 해당 상임이사 또는 단장(사장 직속부서장은 사장, 감사실장은 감사)와 서식 제1호의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.<개정 2019.9.18>

제5조(계약기간)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공사의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경우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.<개정 2019.9.18>

제 3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 · 의결

제6조(청렴의무 위반 심의 및 의결) ①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이 제3조에 규정된 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, 단장 및 부서장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9.18>

- ② 이사회 및 징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. <개정 2019.9.18>
 - 1. 계약위반내용이 해당 임원, 단장 및 부서장 재직기간 중 발생했는지 여부<개정 2019.9.18>
 - 2. 위반내용이 계약서상의 청렴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- 3. 그 밖에 위반내용의 직무관련성 및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
- ③ 임원의 경우 위반 심의 제안은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하며, 기타 심의·의결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<개정 2019.9.18>
- ④ 임원의 직무청렴 위반과 관련한 이사회 개최 및 의결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. 단,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<개정 2014.11.28> <개정 2019.9.18>
 - ⑤ 단장 및 부서장의 청렴의무 위반 심의·의결 절차 및 방법은 징계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9.9.18 >

제7조(재심청구)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. 다만, 단장 및 부서장의 경우에는 징계인사원원회 관련 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9.9.18>

② 이사회 및 징계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9.18>

제 4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

제8조(청렴의무 위반 시의 제재) ①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기 지급되거나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지급중지(이하 "환수"라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단장 및 부서장의 경우에는 보수관련 규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4.11.28>

②임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형벌의 양형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정한다<개정 2014.11.28>

구 분	벌금형	자격정지	자격상실	금고 이상
제재 사항	성과급의 1/4	성과급의 1/3	성과급의 1/2	성과급 전액 환수

제9조(성과급의 환수절차 등) 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, 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된 환수금액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형의 확정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. 다만 무혐의 확정 시에는 유보된 성과급에 유보된 기간 동안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9.18>
- ④ 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청렴계약 체결 이후 임원이 수령한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·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10조(퇴직 후 제재) 임원이 퇴직 후 재직 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. 단,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손해배상 청구)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.9.18>

제 5 장 기 타

제12조(담당부서) 이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은 윤리경영 소관부서장이 담당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이 규정 시행 이전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이 규정 시행 이전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[서식 제1호]<개정 2019.9.18 >

직 무 청 렴 계 약 서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이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까지로 하며, 임원은 임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청렴의무)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은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3조에서 정한 청렴의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반 시 제재) 임원, 단장 및 부서장은 재직기간 중 제3조에서 정한 청렴의무 내용을 위반 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5조(계약서의 보관)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한국가스기술공사(직위) 이 이 이 이 이

한국가스기술공사 (직위) o o o o o o o (인)